

2021년 충남 지역산업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련 법령 교육

2021. 9. 8.

“평가는 공정하게
지역은 풍요롭게”

Part

2021년 충남 지역산업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련 법령 교육

I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 사업비 정산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사업비 정산 안내

D&ONE 도원회계법인
Accounting Corporation

목차

- 1 사업비 정산
- 2 사업비 정산 규정
- 3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 ★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사항 요약(2020.5.11.개정)
-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Part 1

사업비 정산

© 2021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oOne logo and name are trademarks of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1 사업비 정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_제2조(용어의 정의)

15.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9.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사업비 사용에 대한 검증, 감사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가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정사용을 방지

© 2021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oOne logo and name are trademarks of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4

ISSUE: 정산을 통한 정산금(반납금액) 확정

21.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begin{aligned}
 & \text{정산금} \\
 & = \\
 & (\text{사업비 현금 집행 잔액} + \text{이자} + \text{현금 불인정금액}) * \text{국비 현금비율} \\
 & + \\
 & (\text{사업비 현물 집행 잔액} + \text{현물 불인정금액})
 \end{aligned}$$

사업비 집행 담당자의 Needs
“사업비 불인정 금액 최소화!”

비의도적 사업비 오집행을 줄이는 방법?

규정 숙지!

도원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본 방침

불인정 확정 기준

- 01 집행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도, 규정 준수)
- 02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

시부인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연구환경의 자율성 존중과 수행기관의 행정 효율성 감안하여 판단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담기관과 추가적 검토 수행

Part 2

사업비 정산 규정

2

사업비 정산 규정

01 적용 규정 파악하기: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02 규정 download:

-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click! > '산업기술혁신사업' 검색

03 규정 download 후 출력

본 강의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8호(2020.5.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3호(2020.11.6.)
개정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사업비 정산 규정

사업비 관련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
직접비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목으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간접비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관경비에 투입되는 비목으로, 기관운영 목적에 사용. 규정 및 과기부에서 최대편성비율을 고시하고 있음
전담기관	중앙부처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산업부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관리기관	전담기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13개 광역시도에 설립한 '지역사업평가단'
수행기관	과제의 수행주체가 되는 기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 과제유형에 따라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이 있을 수 있음
일괄협약	총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
단계협약	총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
연차협약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

Part 3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 2021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oOne logo and name are trademarks of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3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사업비 집행 4대 원칙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 ▶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 ▶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 ▶ 사업비카드(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21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oOne logo and name are trademarks of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12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_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_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 ① 총괄책임자/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계좌 또는 RCMS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카드(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예외로 한다.
- ⑤ 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이때 총괄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3. 수행기관 상호간 사업비 현금 거래. 다만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⑥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협약의 변경

협약의 변경은

- ▶ 승인사항,
- ▶ 통보사항,
- ▶ 그 외 자율적 변경 가능 사항이 있다.

각 사항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_제27조(협약의 변경)

[승인] ②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연차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통보] ③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협의]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승인사항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장비·시설을 구입하지 않거나(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구입하는 경우
6.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7.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해당연도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8.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단,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예외)
9.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0.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통보사항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사업비요령 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5. 사업비 계좌의 변경

DoOne 노원회계법인
Accounting Corporation



3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_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_제11조(직접비 사용)

- ①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한다.
- ② 직접비 중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원래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 구매
 2. 원래 사업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구매
 3. 원래 사업계획상 예정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③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⑥ < 삭제 >
- ⑦ **최종연도에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NEW**
단, 장비 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 ⑨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 ⑩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
- ⑪ 그밖에 직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4를 따른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_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_제12조(간접비 사용)

- ① 간접비는 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공동운영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 통보를 통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간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를 따른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사항 요약(2020.05.11. 개정)

사업비 정산 관련 사항 **NEW**

1.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계속과제에 청년의무채용 예외조항 신설
* 현행은 신규과제 공고시에만 예외 가능함. 공동운영요령 제26조 참고
2.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
* 객관적으로 진위 확인이 불가능 수행기관 내부자료(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는 원본 보관 필요
* 사업비 요령 제9조 참고
3.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 단, 직접비에서 계상 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 행정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 집행 불가
* 사업비 요령 [별표2,3,4,5]
4.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중기부와 동일)
* 사업비 요령 제5조, 제13조, 제17조, [별표2]
5.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출자·출연기간 연장(현 5년→추가 5년)
* 사업비 요령 [별표3]
6.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면제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현금) 5% 이내로 **편성**하고 증빙 제출 면제
* 5% 초과 **계상** 시에는 연구과제운영비 전체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업비 요령 제16조, 제18조, [별표2,4,5]
7. 장비구입 후 낙찰차액 발생 시 다른 용도로 전환불가(장비, 재료비로만 사용)
* 사업비 요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사항 요약(2020.05.11. 개정)

사업비 정산 관련 사항 **NEW**

변경 사항은 통상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나,
지원인력 인건비(3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4번), 사업비 세목 간소화(6번), 장비구입 낙찰차액 반납(7번) 관련
사항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부칙 (2020.5.11.)

부칙 (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3조, 제17조 및 [별표2]의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제16조, 제18조 및 [별표2,4,5]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제11조의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및 [별표2,3,4,5]의 비영리법인 지원인력 인건비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Part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_[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이월금은 예외)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제출하는 변경내역 포함)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시제품, 컨설팅 등은 예외로 함**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_[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 11. 협약 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협약 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집행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함
- 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 12.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관련 비용(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 여비, 인쇄비, 결과물의 운송비에 한함) 제외)
- 13. 환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중단일이 포함된 달은 1개월분 전액을 반납)한 금액
- 16.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았으나 해당 가점 조건을 미유지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전액 반납
- 17.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단,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 18. 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2019.4.29. 이후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인건비

1. 공통사항

-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NEW**
- 나.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마.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 바.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 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 아.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자.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신규채용을 이유로 현금지원을 받는 연구원에 한함)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에 따라 기본 채용한 청년인력의 퇴사 시, 이를 대체할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불인정 환수하지 아니함

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

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상 기본채용 인원을 다른 참여연구원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요령 제1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인건비

2. 내부 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 인건비 >> 취업 상태인 학생의 학생 인건비 불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편취 또는 유용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2.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 2020.11.6. 개정: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

NEW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담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연구활동비

1. 국외 출장경비

-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가. 신문구독료(과제관련 기술전문신문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나. 협약 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연구활동비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 시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제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적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중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연구활동비

5.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6.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7.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회의비 제외)
-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9.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국내의 출장비 등

NEW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회의비 제외)
-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연구수당

1. 협약 시 산정한 연구수당(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연구수당도 그에 해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음). 단, 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시작 시 연구수당을 최소 비율(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미만으로 산정한 경우 최소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증액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2020.11.6. 개정: 최종평가 중 성실수행, 연구수당 50% 감액 삭제)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불성실수행	미지급

NEW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이 과제에서 지급한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또는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또는 현물 출자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는 예외로 함

8.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2019.4.29. 이후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9.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NEW



간접비

1. 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시작 시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관의 경우 제6조3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급금
6.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2019.4.29. 이후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주요 불인정 사항

- ▶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 연구수당 초과집행(개인별 연구수당(인건비 50%이내) 한도 초과 집행 또는 과제 평가결과 미반영)
-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사업연관성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
- ▶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사업비로 집행한 인건비가 큰 경우 차액 불인정
 예) 총 지급 급여 200, 참여율 30%, 사업비 집행 가능금액은 60(=200*30%)이나
 사업비로 집행한 인건비가 6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불인정
 →참여기간, 참여율, 참여기간 동안의 총 지급 급여를 잘 관리하면 불인정 발생하지 않음.
- ▶ 증빙서류 미비
- ▶ 수행기관 간 거래(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활용 또는 기관간 실물거래 등)

Part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정산 절차	내 용	추진주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안내 보고서제출독려 공문 발송 	정산기관 → 수행기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기한 내 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 * 연차과제 : 과제 종료후 2개월/ 종료과제 : 45일 이내 	수행기관 → 정산기관
정산자료 검토 및 정산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산자료 검토 및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보완자료 검토 후 과제별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담기관 제출 	정산기관
정산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정산결과에 대한 안내 및 민간추가납부액 납부 요청 *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전담기관 ↔ 수행기관
최종 정산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신청여부에 따라 정산 처리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산금 반납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재정산하되,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내역 확정 	전담기관 ↔ 수행기관
정산금 징수 및 국고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잔액, 민간추가납부액 등 정산금 징수 후 국고납입 * 민간추가납부액 미납발생 시 전문위원회 상정 	전담기관 ↔ 중앙소관부처 등

안내메일 발송

사업종료 15일전 위탁정산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안내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안내메일 발송

정산결과 상호확인

불인정사항 및 금액에 대해 수행기관 확인 득한 후 보고서 발행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RCMS 상시점검 중요성 대두

목적 | 분기별 사업비 집행점검을 통한 부정사용 조기발견 및 올바른 사업비 지출과 타당한 증빙제출을 유도

점검방법 | 각 과제시작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수행기관별로** 실시

결과활용 | ① 부정사용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② 불인정 가능성 있는 사항의 경우 수행기관 안내를 통한 정정기회를 제공하며,
 ③ 본정산 시 상시점검 결과 활용

상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상시점검 결과 '미흡'건에 대하여 증빙서류 보완 또는 사업비 집행 수정 필요.
 다음 상시점검 시까지 미흡사항 해소되지 않아 누적된 미흡건수 많을 경우 RCMS 집행분석 알림 대상이 되는 등 사업비 부적정 집행 수행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음. **다음 상시점검 전까지 미흡사항 해소 필요**

과제수행주기별 상시점검 주기 예시

각 과제 수행주기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7월차	8월차	9월차	10월차	11월차	12월차
1차 대상기간			2차 대상기간			3차 대상기간			4차 대상기간		
			1차 점검	1차 컨설팅		2차 점검	2차 컨설팅		3차 점검	3차 컨설팅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인건비 제출 서류

-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영리법인 지원인력 인건비 **NEW**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학생인건비 제출 서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 지출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되 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제출 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서**
-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 외자구매(국의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활동비 제출 서류

- 국외 출장여비
 -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국내여비
 -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NEW**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계좌이체 증빙
 -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활동비 제출 서류

-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국내, 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활동비 제출 서류

-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비 현물부담 신청서(협약서)
 - 기술거래 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외체재비
 - 내부결재문서/임차계약서 사본/항공료 영수증/의료보험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증명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활동비 제출 서류

NEW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집행내역(사용일자, 내역, 금액, 거래처)은 RCMS에 입력하되,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사업비 유용 등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연구과제운영비는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5% 초과 계상한 경우에는 연구과제운영비 전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과제추진비 제출 서류

※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사용일자, 내역, 금액, 거래처)은 RCMS에 입력하되,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 (사업비 유용 등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명세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5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연구수당 제출 서류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 증빙

기타 세세목 제출 서류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Always Thanks for your interest toward ...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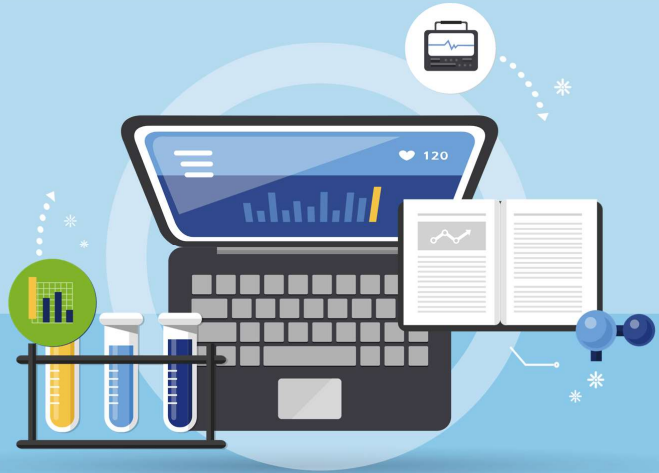
“평가는 공정하게
지역은 풍요롭게”

Part
II

2021년 충남 지역산업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련 법령 교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의 이해와 학습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의 이해와 학습



2021. 9. 7~8.

이재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변호사

Contents



- I. 개요 – 규정/제도의 특성 이해
-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 I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 I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학습
- 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방향

Chapter I



개요 - 규정/제도의 특성 이해

1 2 3 4 5 개요 - 규정/제도의 특성 이해

법, 규정, 제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법잘알



1 번 문제

법이나 규정은 쉽고 빠르게
개정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4

연사 소개

이재훈(gq5974@korea.ac.kr)

학 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사

경 력 現 고려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겸임교수
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변호사·연구위원
前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주)파운트투자자문 비상근감사
 現 (주)아츠앤컬처 문화칼럼니스트
 現 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 법률자문위원
 現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민간위원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분과장)
 前 법무법인 강호 소속 변호사(IP,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前 서울대학교 혁신설계 및 통합생산 연구실 연구원

안전관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연구실, 실험실 등에 대한 안전 제도, 안전 규정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 없는 사건들



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17년 지열발전연구의 포항 지진 촉발



15년 실험실 액화질소 누출사고



13년 ○대학 화학실험 중 대형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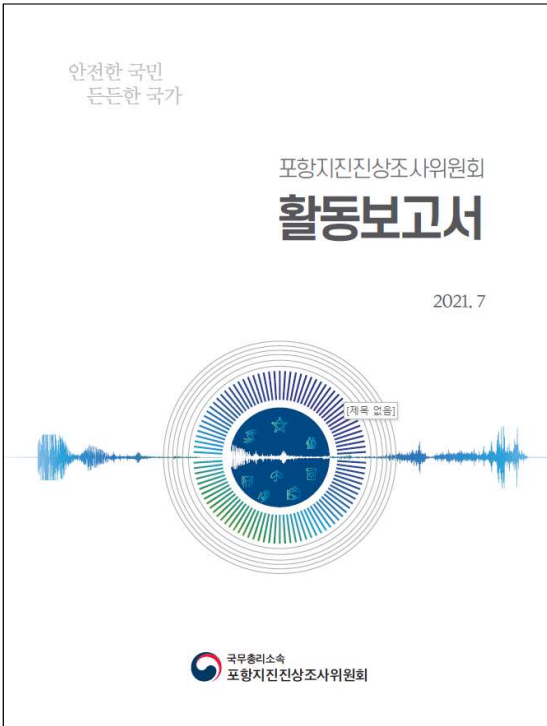


13년 실험장비 설치 중 폭발 사망사고



13년 ○대학 유해물질 누출(2,000여명 대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2021.7.) 발간



6	시추기 등 시설·장비 관리는 적정했는가?	302
	요약	
	▶ 지진계 관리·분석 부실과 주요 자료 누락행위	
	▶ 시추장비 규격 및 실제 성능의 타당성	
	▶ 시추기 소유 관계의 수익구조 및 자금흐름	
	조치 및 권고 사항	
IV.		
포항지진	1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대한 형사책임 문제	353
진상조사	2 지열발전 사업 인허가 기관인 포항시의 지진위험성 관리 소홀 문제	353
의의와 주요성과	3 국가 연구개발사업(지열발전 사업 포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354
	4 기타 사항	354
V.		
남은 과제들	1 지진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360
: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 개선 및 대책	2 기타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	364
부록		373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2021.7.) 발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	368	369	V. 남은 과제들: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 개선 및 대책
(3)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정 결과 이의신청 절차 개선(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등 현행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절차적 하자가 아닌 평가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요소기술 사전검증 제도화(산업통상자원부)			
상용화기술 개발 사업은 이전에 수행한 실증사업의 발전 단계로서 이미 사업에 필요한 요소 기술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³⁶⁹⁾ .			
실증연구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 미흡한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요소를 인지하고서도 연구 수행을 계속하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국가 연구관리 규정 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사업의 기술적인 성숙도 또는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기술을 수행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선정 및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5)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관리 철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연구)수행기관이 과제수행기간동안 민간부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되거나 외주계약을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전담기관은 연차별,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해 외주의 원인, 불가피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해약 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재정상, 기술상 문제가 있는 수행기관이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실질적인 평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6) 국가 연구개발 사업 내용 변경 시 과제 관리 개선(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복수의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의견에 따라 연구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의무와 담당 참여기관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관리·감독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는 등의 과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평가매뉴얼 마련(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30조(협약의 변경) 제6항은 "수행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제32조의5(특별평가)의 특별평가 대상, 주제,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8)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구윤리 범위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윤리와 관련 규정(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2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 ³⁷⁰⁾ 만 규정하고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수많은 절차들 (feat. 국회 과방위 전문가 공청회 진술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인 **공청회 발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재훈 변호사, 2018.11.16)



고 위험한 유해인자를 활용한 새롭고 모험적
사고위험의 범위와 크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한 공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2005년 「연구실 안전
안전법」을 제정하여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

드디어 2021년! 이제야 2021년?



'연구실안전법'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2021.01.05. 오후 12:23 최종수정 2021.01.05. 오후 12:2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 3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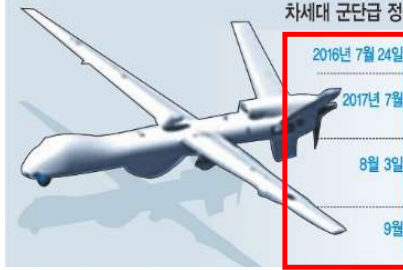
요약봇 가 📄 🗨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연구과제 중 드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연구자에게?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 추락사고 및 조치 경과

2016년 7월 24일	UAV-II 논산 육군항공학교 활주에서 첫 비행을 위해 이륙도중 추락
2017년 7월	방사청 감독관실 사고 원인에 대한 검토보고서 완성 -ADD 비행제어팀 전원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
8월 3일	ADD, 방사청에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 -연구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 포함
9월	방사청, 연구팀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입장 고수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원 징계방안 결정

방위사업청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군단급 UAV-II 시제 1호기 추락사고 검토 보고서' 등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UAV-II 초도비행이 이뤄졌다. ADD가 개발을 주관하는 UAV-II는 현 군단급 UAV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2~2017년 118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초도비행에 나선 무인기가 이륙 직후 왼쪽으로 쏠리더니, 활주로 끝단에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무인기 동체가 완파돼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독관실 조사결과 ADD 비행제어팀 소속 담당자가 무인기의 고도·속도·풍향을 측정하는 장비의 좌표 신호체계를 반대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무인기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측정 장비가 이를 인식해 무인기가 우측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신호가 반대로 입력돼 있다 보니 좌측으로 반응했고, 무인기는 결국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감독관실은 연구팀 담당자가 측정 장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행제어팀장 이모씨를 비롯한 팀원 5명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고, ADD 인사규정 제21조(손해배상 의무)에 의거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난 7월 ADD에 통보했다. 팀원들이 전적으로 동체 파손 배상을 부담한다면, 1인당 13억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ADD는 방사청 입장에 불복해 지난 8월 3일 방사청에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ADD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고, 연구개발 중 발생한 일로 연구원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방사청은 연구팀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DD가 상급기관인 방사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 요구 등이 확정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제공내??

MT 머니투데이

"연구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손해청구 못한다"

16면 1단 | 기사입력 2018.03.08. 오후 4:00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9

13

요약본

가

다

공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보고]

지난해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드론(무인기) 1대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했다. 다음 해 7월 방위사업청은 이 연구를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 비행제어팀 연구원 5명에게 중징계와 함께 1인당 13억원씩 총 6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가혹한 조치가 한 언론사 보도로 알려지자 이 징계를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구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현재까지 2만 여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납시성 제목이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검수 절차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가 R&D 도중 입힌 자산손실에 대해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에도 연구비 환수 등 절차 없이 관련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가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험설비·장비 파손 등의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몰래 암시장이나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 불법행위·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현행 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책과 제도는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

- 정책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적응과 학습과정을 통해 제도를 변형시켜 나감
- 정책과 제도는 서로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외부적 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형시킴

정책과 제도의 형성 순환 과정



정책과 제도의 특성으로 인한 필연적인 현장 적용 시차 문제



법은 완벽을 향해 한 방향으로 향해한다?



2 번 문제

완벽한 법이나 규정은 존재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돌고 돌고~ 도는♪~♪

연구실 안전점검 중복 규제 없앤다

김보현 | 승인 2019.11.19

정병국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차량에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 가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하도록 했다.

Chapter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과기부장관하고 협의 없으면 제정, 개정을 못한다!?



3 번 문제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모든 장관, 처장 등은 각 부처의 국가R&D사업 추진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라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를 꼭 거쳐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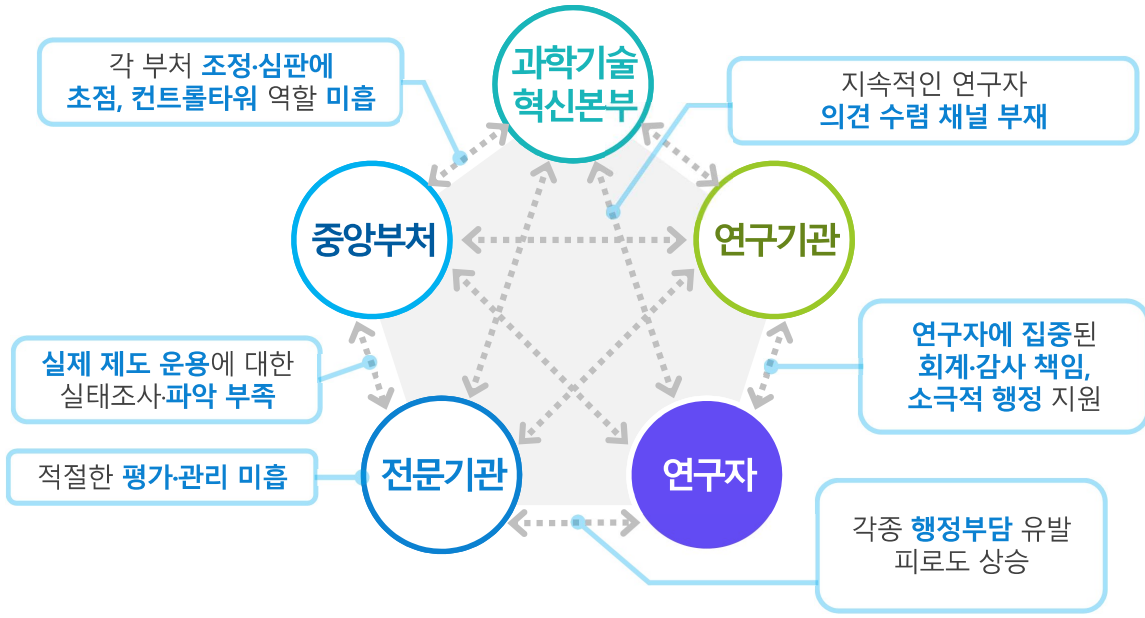
X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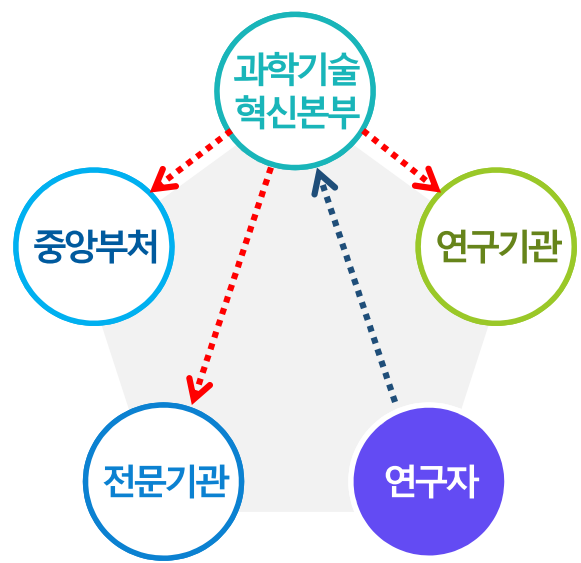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체계 일원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특별법?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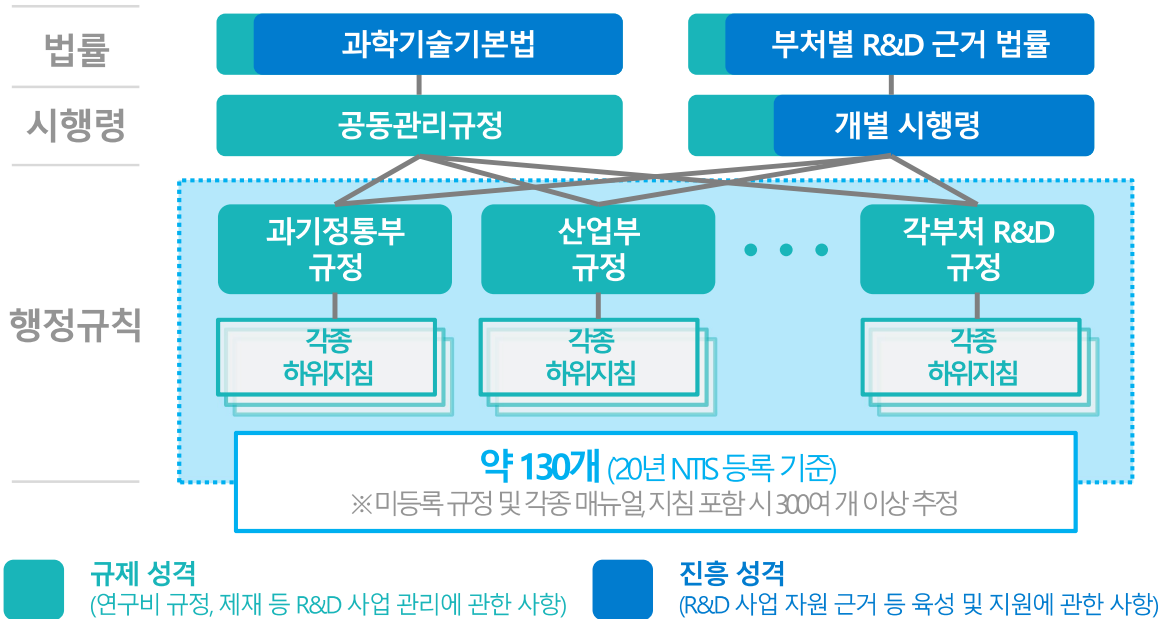
4 번 문제

특별법과 일반법 중에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기본법과 개별법 중에서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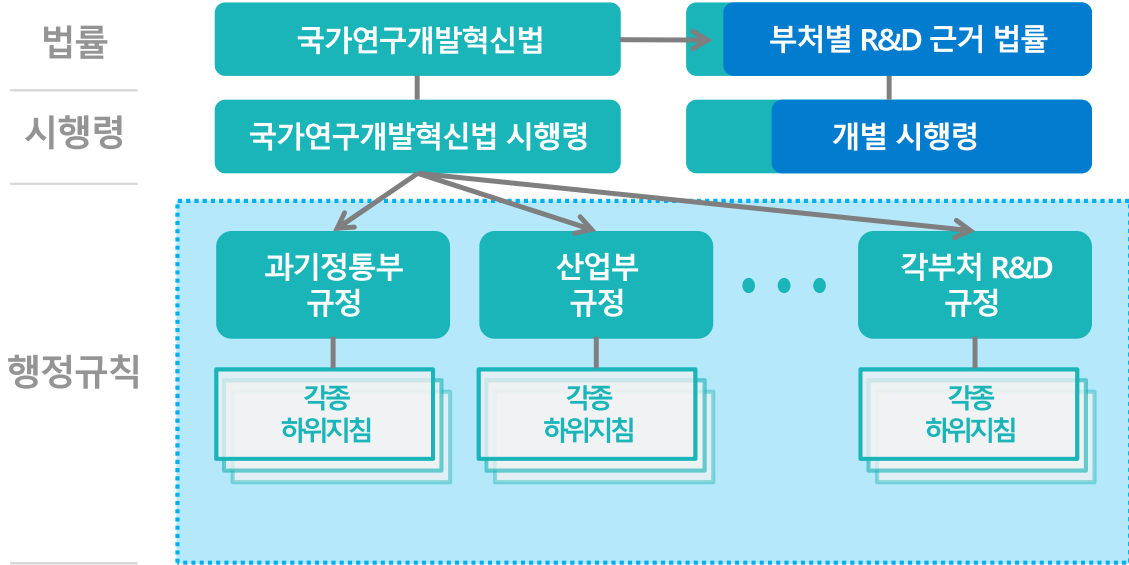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낮고 복잡한 R&D 관리 법 체계**에서 기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이제 차근차근 시작 단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부처별 훈령·예규·지침

부처별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부 처	세부규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통합이라는데 통합이 2개?



5 번 문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만 운영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10년 이상 구호로 그친 “선도형·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전환”

각 부처의 '분산형·칸막이식' R&D 사업 운영 →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화**

▶ 국내 대학은 연평균 8.2개, 출연연은 4.7개의 전산시스템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중복·반복 입력



정출연, 대학, 민간회사는 법 적용이 다르다??

6 번 문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정출연, 과기정출연 특정연,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포함되며,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의미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반 개편

- ✔ 기존 R&D규제 혁파 방안의 내용을 입법화
- ✔ 필연적인 현장 적용 시차 문제 최소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행정부담
경감

- ✔ 전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실화
- ✔ 전문기관 내실화

도전적 연구
장려와
연구책임성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총괄 명확화
- ✔ 국가R&D과제 선정부터 정산까지 과정 일원화

Chapter I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이제 과기법, 공동관리규정은 안봐도 된다?



7 번 문제

공동관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국연사규정)은 2021년1월1일부로 없어졌다.

맞으면

O



아니면

X



30

기존 법령과의 관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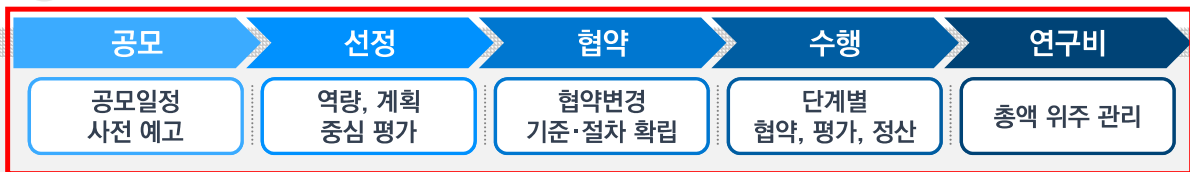
혁신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중 5개 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혁신법으로 이관

과학기술기본법	혁신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항 제외)	법 전반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1항 제외)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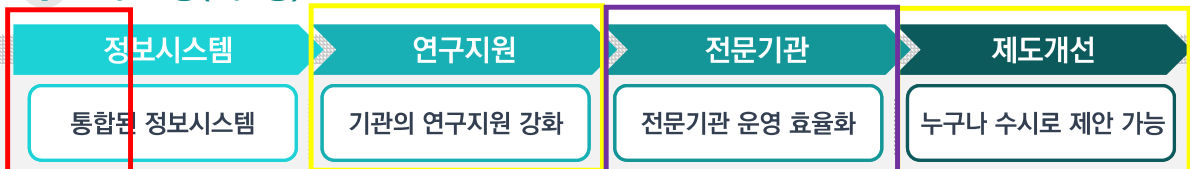
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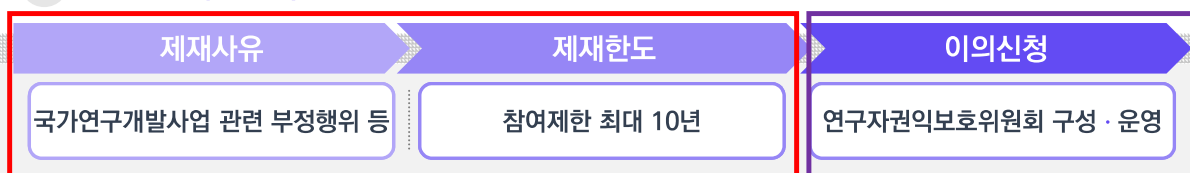
연구절차(제2장)



연구환경(제3장)



연구윤리(제4장)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들은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

시행령은 5개 장 67개 조로 구성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은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규정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행정규칙명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법 제13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법 제13조, 제20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법 제19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 (예정)	시행령 제21조
연구지원기준 (예정)	법 제24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3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 (예정)	시행령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5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시행령 제60조

공공기관 중에서도 과기정출연은 확실히 다르다??

8 번 문제

과기정출연기관들은 타 법률에 연구개발
 과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혁신법
 상 연구비사용이나 제재조치 등에 대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의 적용 범위

아래 사업들은 타 법률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타 법률을 적용

아래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법 제4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②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

③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4세대 두뇌한국(BK)21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로열티(기술료), 연구자 보상, 성공적



9 번 문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기관이 이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그 중 일부는 참여한 연구자의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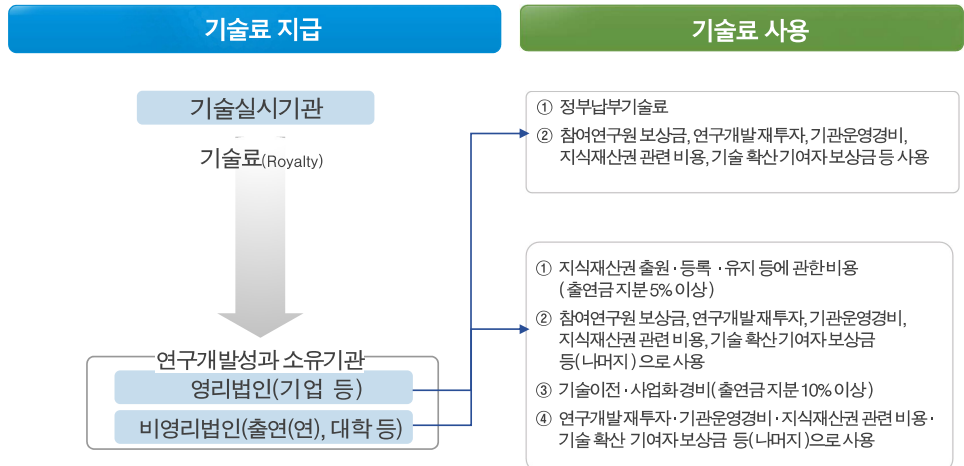
기술료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기술료 개념

목적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기술료 제도 운영 체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10 번 문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11 번 문제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소유하며, 수행 연구기관은 소유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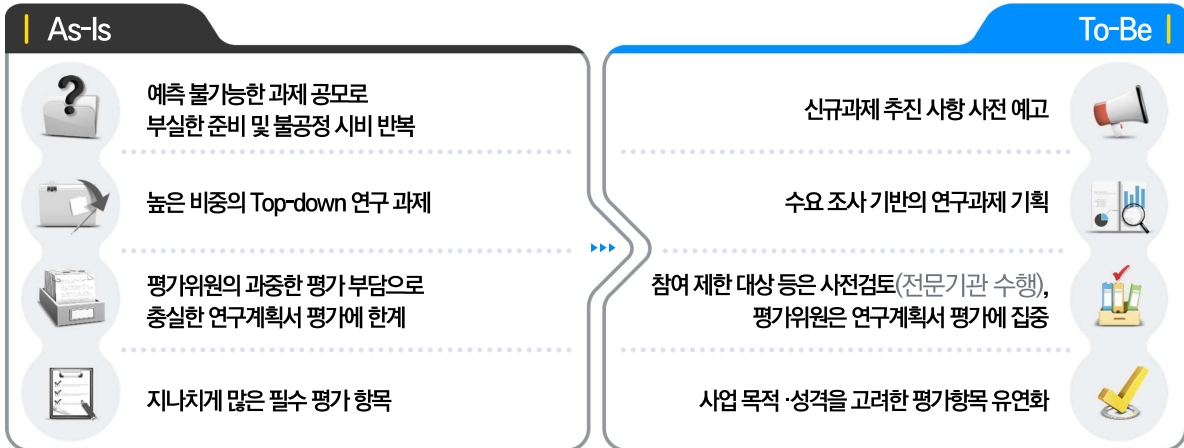


Chapter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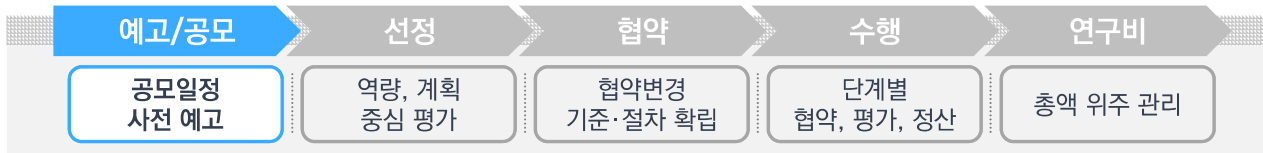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학습

1. 과제 공모 및 선정 프로세스 개선



- 제9조** ① .. 매년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절차(제2장) - 예고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예고 의무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예고 항목 및 예고 기간

제6조(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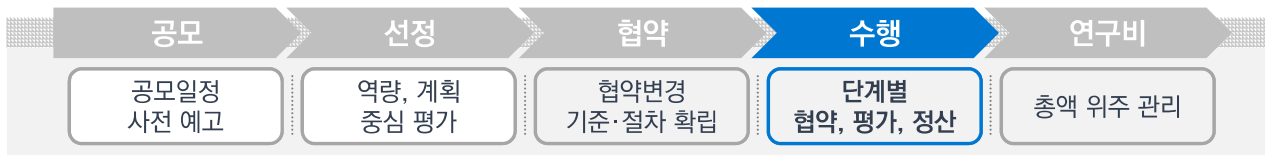
2. 불필요한 행정 규제 혁파

As-Is	To-Be
<p> 관례적 연차 협약, 경미한 사항까지 협약 변경 요구</p> <p> 비목 별 물량 X 단가 중심의 비현실적 연구비계획서 요구</p> <p> 부처·사업마다 다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모호한 인정·불인정 기준으로 연구현장 혼란</p>	<p> 과제 착수 시점 1회만 협약, 경미한 사항은 보고로 협약 변경 가능</p> <p> 개괄적 연구비계획서 제출로 유연한 연구비 사용 가능</p> <p>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인정·불인정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p>

제11조 ① ..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을 포함한다)
 ③ ..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통보로 ..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간접비의 계상 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 별 간접비 계상 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연구절차(제2장) - 수행(협약, 평가 등)



법률	시행령
<p>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p> <p>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p>	<p>평가 항목 및 보고서 포함 사항</p> <p>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p> <p>제18조(보고서의 제출)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p>

보고서 제출과 평가

	혁신법 전	혁신법 후
보고서의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화,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명문화
단계·최종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평가) → 실패 시 중단 및 제재조치 → 예외적으로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 및 과정평가)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 ☞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거쳐야 함

누구에게 직접, 간접?



12 번 문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고 부른다.

맞으면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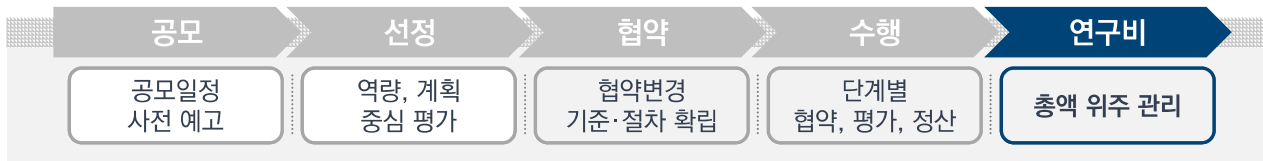


아니면

X



연구절차(제2장) - 연구비



법률

협약 체결 시 개괄적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포함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비목 및 세목)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 마련

- ☞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가급적 유지
- ☞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 명시적인 규정 없이 운영되는 사항은 각 부처와 연구현장의 부담이 없도록 실제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최대한 반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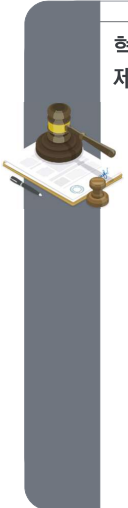
- ☞ 공통 사용기준
- ☞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 ☞ 대학에 대한 별도 기준
- ☞ 기타 비영리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 ☞ 영리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 고시)

제정 이유(과기부 고시 제2020-106호, 2021.1.1.제정, 2021.1.1.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혁신법 제13조

-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규정(제5조부터 제69조까지)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고시 제5조

-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 사용용도

1.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참여연구원·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원·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3.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관련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규정(제5조부터 제69조까지)

연구활동비 사용용도(고시 제10조)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제외한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및 강사료를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회의비 등(식비를 포함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 및 휴일근무 식대 등
8.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9.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각종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반 비용

51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규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고시 제71조)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고시 제72조)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52

연구개발비 정산 등 방법과 절차 규정(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나 증명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의 권익은 법률로 보호

As-Is

- 선정평가에만 이의신청제도 운영
- 연구개발기관이 모든 성과 소유 원칙
- 제재 재검토 요청 시 동일기관에서 재검토
- 연구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구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To-Be

- 모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
- 유형을 고려한 연구성과 소유권 인정
- 제3의 독립기관(연구자 권익보호 및 부정방지 위원회) 재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처분
-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단, 인명손해, 고의중과실 제외

- 제14조 ⑥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 ①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 유형, 참여 유형,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 제33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설치된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 제36조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실패? 성공?

13 번 문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종전의 '성실실패'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맞으면

O

아니면

X

55

세부 제도 변화와 의미

성실실패라는 규정은 삭제

- ☞ 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고 있음
- ☞ 혁신법은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사라짐
-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

제재처분에 대한 면제 불가능

- ☞ 혁신법에서는 제재처분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지 않아 면제조치는 할 수 없음.

제재처분 종류 변경

- ☞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56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실패?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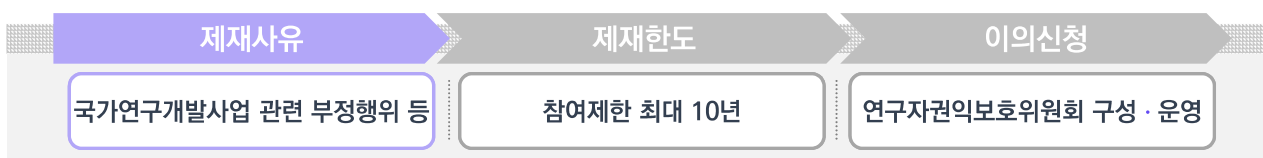


14 번 문제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저자부당표시 행위지만,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저자부당표시행위가 아니다.



연구환경(제3장) - 연구윤리(제재사유)



법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유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1.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행위(위조 · 변조 ·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보안사항 유출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미납

시행령

제재처분 사유의 구체화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 · 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 · 추가 · 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누구에게 직접,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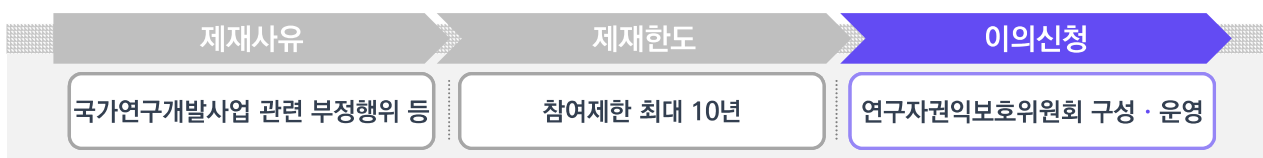


15 번 문제

과기부 장관에게 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모든 부처의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된다



연구환경(제3장) - 연구윤리(이의신청)



법 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6조(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립

Chapter 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방향



디지털타임스

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023면 오피니언



포럼

이 재 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R&D혁신법 ‘연구혁명’ 부싷들 돼야

춘추전국시대에는 ‘극도의 혼란기’를 비유할 때 쓰인다. 국가R&D규정도 어찌 보면 춘추전국시대와 같았다. 부처별·사업별로 100여 개의 고시·훈령·규정 등 행정규칙이 시행돼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상이하다 보니 연구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국가R&D규정의 춘추전국시대는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일됐다. 연구개발 통합법 제정 시도가 불발된 지 20년 만이다. 이제부터 국가R&D과제에 관한 프로세스는 혁신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R&D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 국가R&D과제 관리에 관한 종합적 기준을 담은 기본법이 사실상 없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한 R&D과제 공통규정만으로는 각 부처와 사업별로 R&D과제 관리규정을 운영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혁신법 제정으로 이제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국가R&D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이 이뤄진다. 연구자의 자율·창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개별 국가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한다. 모든 국가R&D과제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우리나라 최초의 R&D규정 현하통일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R&D과제 수행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이 제거된다.

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R&D사업의 추진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혁신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각 부처는 소관 국가R&D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둘째, 각 부처는 국가R&D 관련 법령 등이나 각종 시책을 운영하되, 이에 대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혁신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누구든지 각 부처의 R&D제도에 대해 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연구관리전문기관별·연구기관별 내부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 개별 연구기관별로 운영하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연구자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셋째, 국가R&D과제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수요를 고려한 공모 추진이 원칙으로, 신규 과제 추진 등에 있어 사전예고를 통해 과제 기획과 수행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연구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일 창구에서 R&D과제 정보를 열람하고, 미리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

계획을 구상해 초기 과제 수행 준비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D과제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는 국가R&D과제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해당 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재처분 심사 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행정소송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구제절차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혁신법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6개월은 길지 않다. 혁신법 시행령에는 각 부처 R&D과제 관리에 공통 적용되는 세부사항들이 기술될 것이다. 부처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는 예외도 허용 가능하겠으나,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입법 취지 중 하나인 규정 간소화를 위해서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개별 부처-연구기관-연구자’로 구성되는 국가R&D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결국 핵심은 연구자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혁신법 시행일은 ‘21년1월1일
연구자에게 혁신법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의무와 권리 존재

적극적 대응

→ 완벽한 법률은 없으므로, 지속적인 수정 보완 필수
 연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률 이해와 정확한 대응 필요

규제 주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별 하위령이나 규정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지속적 관심

→ 연구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관련 R&D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제도·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지속

Thank you

감사합니다

